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569 2015년 6월 24일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5년 6월 17일, 전철수 의원 외 18명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6월 18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6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
(2015년 6월 24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전철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25%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며,
- 차 없는 날 행사를 활성화하여 교통수요 관리 및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
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2030년까지 40%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. (안 제3조)
- 차 없는 날,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고,
 온실가스 감축, 자원순환 등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
 함. (안 제2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제33조, 「도로교통법」제6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사항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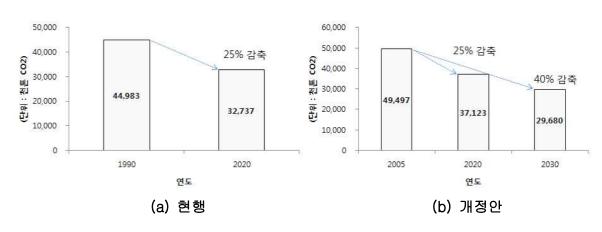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선희)

가. 개요

 본 개정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2030년도까지의 서울시의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현실적으로 변경하고, 차 없는 날, 차 없는 거리를 활성화 하여 교통수요 관리, 자원순환 촉진,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행사프로그램 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1)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(제3조제2항)
- 서울시에서는 2007년 4월'서울친환경 에너지 선언'을 통해 온실가스를
 2020년까지 1990년 배출량 기준 25% 줄이는 등의 장기적인 정책목
 표를 제시하며, 이를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.
-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수 있으나, 목표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.



<그림 1> 온실가스 감축목표

○ 서울시에서는 지난 5월 이클레이(ICLEI)총회에서"서울의 약속"을 대내외에

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5년 기준으로 40% 감축하는 것을 수정 제시한 바 있는데,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음.

- 2) 차 없는 날, 차 없는 거리 운영 (안 제24조)
 - 「차 없는 날」 행사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에너지 낭비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하고 녹색교통 이용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청정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매년 9월 22일을 전후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, 자치구에서도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.

(표 1) 차 없는 날, 차 없는 거리 운영 실적(2014년)

구 분	시기	장 소	행사주관	행사주관 행사명	
서울시	2014.09	광화문일대 (시청~광화문삼거리)	시민공모21개 단체 등	2014 서울 차없는 날	부분통제
서대문구	연중	신촌전철역 ~ 연세대 앞(470m)	협동조합,사회적기업 등 50개 단체	신촌 차없는 거리	전면통제
마포구	매주 토, 일	홍대입구역~국민은행 서교통지점(520m)	추진위원회	홍대 차없는 거리	전면통제
도봉구	2014.11	지운초교후문~도봉아 이나라도서관	청4동 함께Geen 마을만들기 추진단	창4동 시끌벅적 마을축제	전면통제
	2014.04	성 북동 길	환경과	지구를 위한 성북구민 행동의 날	부분통제
성북구	2014.10	이남아파트~생명의전 회종합사회복지관(320m)	나눔한마당 잔치 추진위원회	월곡1동 나눔한마당잔치	부분통제 (1개차선통행)
	2014.06	동덕여대5거리~동덕여 대정문(100m)	월사모	효 잔치	전면통제

- 안 제24조는 차 없는 날 행사를 활성화 하고,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도심지역에서의 자동차운행 억제, 온실가스감축, 자원순환 등과 관련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으나,
 - 차 없는 날을 위한 자동차의 통행제한은 지방경찰청 권한을 침범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일부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관계 법 령

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

제33조 (교통수요관리의 시행)

-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1.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
- 1의2.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
- 2.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
- 3. 주차수요관리, 4. 승용차공동이용 지원, 5.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
- 6. 원격(遠隔) 근무와 재택(在宅) 근무 지원, 7.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
- 8.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4조 (자동차의 운행제한)

-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, 기간, 대상지역, 자동차의 종류·용도·사용목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「도로교통법」

제6조 (통행의 금지 및 제한)

-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(區間)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- ③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 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,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 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 음

7. 수정안 요지

○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제34조와「도로교통법」제6조에는 운행제한 주체가 서울시와 지방경찰청장으로 되어 있어, 동 조례의 근거만으로 자치구에서 자동차 운행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 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서 조항 추가가 필요함.

8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569

제안년월일 : 2015년 6월 24일

제 안 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제34조와「도로교통법」제6조에는 운행제한 주체가 서울시와 지방경찰청장으로 되어 있어, 동 조례의 근거만으로 자치구에서 자동차 운행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 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○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또는「도로교 통법」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치도록 함. (안 제24조제2항)

3. 참고사항: 생략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 및 자치구는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차 없는 날,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으며, 온실가스 감축, 자원순환 등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 다만, 자동차 운행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또는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제반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	정	안	수	정	안
제3조(온실가스 감축목표)	제3조(온	실가스 감	축목표)	제3조(온4	실가스 7	남축목표)
① (생 략)	① (현행3	과 같음)		① (현행고	나 같음)	
② 시는 2020년까지 온실	② 시는	지구온난	화 방지를	② (개정인	<u></u> 라 같음	-)
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을	위해 20	30년까지	온실가스			
기준으로 하여 25퍼센트 감축	<u>총배출량</u>	을 2005	년을 기준			
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	으로 하여	ᅧ 40퍼센	트를 감축			
	하는 것을	을 목표로	한다.			
제24조(차 없는 날)	제24조(;	차 없는 旨	<u>}</u>)	 제24조(ス	나 없는	날)
① (생 략)	① (현행:	과 같음)		① (현행교	라 같음)	
② 시는 제1항의 취지에 따	② 시 및	자치구는	<u>- 제1항의</u>	② 시 및	자치구	<u>는 제1항의</u>
라 차 없는 날을 지정하여	취지에	따라 차	<u>없는 날,</u>	취지에 띠	<u> </u>	<u>없는 날,</u>
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	차 없는	거리를	지정하여	차 없는	거리를	· 지정하여
억제할 수 있다.	도심에서	의 자동	차 운행을	도심에서:	의 자동	차 운행을
	억제할 수	는 있으며,	<u>온실가스</u>	억제할 수	있으며	, 온실가스
	<u>감축, 자</u>	원순환 등	과 관련한	감축, 자연	년순환 -	등과 관련한
	다양한	행사를 기	개최할 수	다양한 형	행사를	개최할 수
	<u>있다.</u>			있다. 다면	<u> </u>	차 운행제한
				조치를 추	하는 기	경우 「도시
				교통정비	촉진'	법」 또는
				「도로교통	<u>통법」에</u>	따른 제반
				절차를 거	쳐야 한	<u>다.</u>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40퍼센트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 및 자치구는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차 없는 날,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으며, 온실가스 감축, 자원순환 등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 다만, 자동차 운행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또는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제반절차를 거쳐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온실가스 감축목표)	제3조(온실가스 감축목표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	② 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2030
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25퍼센트	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5년을
<u>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</u>	기준으로 하여 40퍼센트를 감축하는 것
	을 목표로 한다.
제24조(차 없는 날)	제24조(차 없는 날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는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차 없는	② 시 및 자치구는 제1항의 취지에 따라
날을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	차 없는 날,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
<u>을 억제할 수 있다.</u>	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
	있으며, 온실가스 감축, 자원순환 등과
	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	다만,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
	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또는 「도로교
	통법」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쳐야 한다.